

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과오납,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2377호)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업 신고,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,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등의 업무이관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과오납,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마련 (안 제5조의2)
 - 과오납,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 신설
-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현실화
 - 공장등록 증명 : 1통 900원 → 1건 1,000원
 -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: 1통 1,000원 칼라도면첨부 1,500원
→ 1필지 1,000원 칼라발급 1,500원

-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: 1건 신규 4,500원 연장 2,700원
→ 1건 신규 5,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3,000원
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: 1건 법인 27,000원 개인 18,000원
→ 1건 법인 30,000원 개인 20,000원
-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: 1건 1,500원 → 1건 800원
-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(신설) : 1건 800원
-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(신설) : 1건 1,000원
- 어업허가증(어업신고증) 재발급(신설) : 1건 1,000원
-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(신설) : 1건 800원
- 의료기관 개설신고 : 1건 36,000원 → 1건 40,000원
- 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: 1건 18,000원 → 1건 20,000원
-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: 1건 36,000원 → 1건 40,000원
- 부속의료기관신고사항 변경신고 : 1건 18,000원 → 1건 20,000원
- 체육시설업 신고 1건 27,000원 →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,000원
-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9,000원 →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,000원

○ 법령개정에 따른 비디오물, 게임관련 업종추가 및 삭제와
영화상영관 변경등록, 영화업 신고, 영화업 변경신고, 영화업
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 신설

- 비디오물제작업, 비디오물배급업,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
청소년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
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: 1건 20,000원
- 복합유통·제공업의 신고(삭제)

- 비디오물제작업, 비디오물배급업, 게임제작업, 게임배급업, 청소년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: 1건 5,000원
- 영화상영권 변경등록(신설) : 1건 10,000원
- 영화업 신고(신설) : 1건 20,000원
- 영화업 변경신고(신설) : 1건 10,000원
-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(신설) : 1건 5,000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2377호)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1항, 제36조제1항, 제57조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6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과오납, 취소 등 특정 사유 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,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,

- 법령개정에 따른 비디오물, 게임관련 업종추가 및 삭제와 영화 상영관 변경등록, 영화업 신고, 영화업 변경신고,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지역별로 금액의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